2023년 『세대별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욕성사업』 스핀오프 기업 창업 지원 예비창업자(3차) 모집 공고

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기반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> 2023년 09월 20일 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
1. 모집 개요

- □ 사업목적
 - o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,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
 - 0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
- □ 지원대상
 - (공통사항)
 -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,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이 가능한 자
 - 旣 기술이전 수행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
 - ※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: 덧붙임.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활용
 - ※ 우대사항:『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』청년 기술인재육성 취·창업지원 교육생 모집공고 참여자(교육신청 必)
 - (지원유형)
 - 유형 ① 예비창업자(미취업자)
 - 유형 ② 예비창업자(재직자 및 근로자 대상)
- □ 지원규모 및 기간
 - (지원규모) 10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30,000천원)
 - ※ 과제별 기술시업화지원(최대 20,000천원), R&D기획지원(최대 10,000천원) 중복 기능
 -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~ 12. 29(금)

2. 지원 분야

□ 지원분야 : 『중소기업기술로드맵』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

구 분		전략기술 분야	
4차 산업혁명	디지털전환	- 서비스플랫폼, 디지털콘텐츠, 사이버보안, 차세대이동통신, AI·빅데이터	
	사회안전망구축	- 기능성 식품, 디지털헬스케어/의료기기, 스마트홈, 스마트시티, 재난/안전	
	환경에너지 혁신	- 섹터커플링, 자원순환 및 에너지재활용, CCUS, 신재생에너지	
조 시 기	미래혁신 선도	- 이차전지, 전기수소차, 바이오, 미래형 선박, 자율주행차, 우주·항공, 시스템반도체, 지능형로봇	
중도기합성경기단	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	- 전기전자부품, 섬유, 산업용기계,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, 스마트제조, 금속 소재 및 성형가공, 세라믹, 유기/복합소재	
소재/부품/장비		- 비대면디지털, 그린에너지, 바이오, 전가전자, 자동차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미래소재, 기계금속	

[※]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"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(2023~2025)" 참조

3. 지원내용 및 방법

- □ 지원내용 : 同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에 대해 제품 고도화, 사업화, R&D기획 등을 위한 전문기관(업) 외주용역(가공)비 지원 ※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, 자산성 물품,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
 - 세부 지워내용

구 분	지 원 분 야	지 원 내 용
	시제품 제작	-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(설계, 시험)을 지원 - 자체 R&D가 종료된 경우 우선지원
기스	제품고급화	- 기존 제품의 고도화(기능 및 공정개선 등) 지원
기술 사업화 지원	특허 출원/등록 재원	- 지식재산권 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 등) 출원비
	시험·인증	- 제품인증, 성능평가(시험분석, 신뢰성/성능인증) 등
	마케팅 지원	- 신규(시)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
	디자인 지원	- 디자인 개발(개선) 및 브랜드 개발(개선)
R&D 기획지원	기술료 지원	-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
	전문가 활용비	- 중앙 및 지자체 과제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 - 컨설팅 지원 및 선행기술조사 등
	조사분석비	- 시장조사·분석, 특허조사·분석, 수요조사·분석 등
기타	자유제안	- 상기 프로그램에 해당이 없는 필요사항

[※] 기타 자세한 사항은 "덧붙임 3.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" 참조

- □ 지원방법 :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(업)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
 - ※ 단,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(가공) 기업(관)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 및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워비 지급 가능
 - ※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'실패'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(예비)창업자 대상 환수조치

4. 사업 추진절차

구 분 세 부 내 용 · 광주테크노파크 및 I-PLEX광주 홈페이지 참조 사업 공고 및 홍보 - 기술이전 DB 공유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및 접수 - 예비창업자 → 우편 및 방문(우편제출 권고) · 예비진단 및 서류 검토 여건검토 - 기술이전 수요 타당성 검토(광주TP↔담당기관) -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진단 등 - 평가위원회 개최(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) 선정평가 ·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(광주TP↔예비창업자↔공급기업) 협약체결 - 수요기술 매칭 데이 진행 등 ※ 추후 별도 안내 ·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각 지원분야별 과제수행 ·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 - 기술사업화지원 : 신청 아이템 기반 지원 프로그램 추진 - R&D기획지원 : R&D기획 수행 및 전문가 보강이슈 도출 중간점검(필요시) ·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· 수행결과 최종보고(예비창업자 → TP)

※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사업비 정산 및 후속조치

·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

5. 신청방법

- □ 신청양식 : (재)광주테크노파크(www.gjtp.or.kr) 및 I-PLEX광주 홈페이지(www.iplexgj.com)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
- □ 제출서류
 -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 - ㅇ 첨부서류
 - 1.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전부 표기) 1부
 - 2.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 - 3.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1부
 - 4. 폐업사실이력 증명원 1부(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)
 - 5. 재직증명서 등 각 1부(재직자 및 근로자에 한함)
 - 6. 교육증명서, 지식재산권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7. 기술이전 계약서 및 증빙자료 각 1부(기술이전 완료자에 한함)
 - 8. 기술이전 의향서 1부(붙임5. 소개자료 기술이전 선택자에 한함)
 - 9. 기술수요 조사서 1부(기술이전 완료자 및 기술이전 선택자 外)
 - 10. 전문가 프로필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
 - ※ 전문가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 限, [덧붙임 1] 별첨2 작성
- □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(접 수 처) I-PLEX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(동구 동계천로 150)
 - (접수기한) <u>공고일로부터 ~ 9. 26(화) 17:00</u>
 - ※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□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	문의처	이메일
(재)광주테크노파크 (I-PLEX창업센터)	박장곤 선임	062-239-9613	jjanggon@gjtp.or.kr
	박유정 전임	062-239-9615	uj4047@gjtp.or.kr

____ 6. 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 : 예비진단(적정/중복성 검토) → 선정(대면)평가

□ 세부 추진일정



※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□ 세부 추진일정(안)

- ㅇ 1차(서류검토)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
- ㅇ 2차(선정평가) :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
-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(최고, 최저 제외) 70점 이상 기업
 - ※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(不)
- ※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,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' 일정 개별공지
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'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' 높은 과제 우선 선정

□ 평가배점

항 목	평 가 지 표	배 점	
이전기술 파급성(40점)	- 창업 아이템 및 이전기술의 성능 및 기능		
	- 이전기술의 기술 경쟁력 및 준비성	15	
	- 이전기술의 성장성 및 시장성	10	
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(45점)	-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5	
	- 비즈니스 모델(Business Model) 전략 구체성	15	
	- 개발결과 활용 및 수익성 창출 방안	15	
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(10점)	-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	5	
	- 성과목표 명확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	5	
우대가점(5점)	- Co2 저감기술(제품), 재생에너지 기술(제품)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		
	- (예비)창업자 자부담율 20% 이상 적용 시	3	
합계			

7. 유의사항

- 1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개별통보)
- 2. 유형 ① : 예비창업자 유사 지원사업 중복 불가(ex. 예비창업패키지 등)

유형 ② : 대표자 이중 창업 및 사업 전환 제외

- 3.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
- 4. **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**로한 **공급가액 기준**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: **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**
- 5.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신청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- 6.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7.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※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
- 8. **사업 선정 후 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**하며, 사업비 집행 시 **창업자 부담금을 우선** 활용하고,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
- 9.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 비율 감액 지급
- 10.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 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
- 11.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·관리·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 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
- 1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 - ·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
 - ·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(※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)
 - ·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'실패'(또는 이에 준하는 '미흡'시) 판정 기업
 - ·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
-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
-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

□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

○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-32호(2018. 1. 22.) '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' 적용 : <별표 3>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

붙임 1.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

- 2.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
- 3.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
- 4. 지원제외 대상 업종
- 5.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